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2.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2월 8일

나. 발 의 자: 차인영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4년 2월 21일

라. 상정일자: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4. 2.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차인영 의원)

가.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조항 신설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조항 신설
- 탄소중립 도시의 추진 조항 신설
-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조항 신설
-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개정조례안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5조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실시 의무를 근거하여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6조에서는 법 제26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 등의 온실가스 목표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17조는 법 제29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의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이를 근거하여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23조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법 제36조제3항에서 구청장에게 부여한 의무를 근거로 해당 조항을 신설함.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을 통해 신설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환류하는 제도로써 법 제2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실시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서울시 및 서울 10개의 자치구에서는 해당 예산제도를 조례에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안 제17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에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22년 ‘탄소중립 그린도시’, '23년 ‘탄소중립도시(Net-Zero City)’ 공모 등을 통해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고자 하였음. 현재 환경부에서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관련 추가적인 공모 계획이 없음에 따라 우리 구는 법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우리 구도 여름에는 극심한 폭우 및 폭염, 겨울에는 잦은 폭설 등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로 부여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실시, 탄소중립 도시의 추진 등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히 규정하였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8
------------	-----

발의연월일: 2024. 2. .

발 의 자: 차인영, 우경란, 유승용

신흥식 의원(4인)

1.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조항 신설
- 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조항 신설
- 다. 탄소중립 도시의 추진 조항 신설
- 라.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조항 신설
- 마.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 2. 9.~ 2. 13.)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앞에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을 삭제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고,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
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구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구청장은 구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
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탄소중립 도시의 추진) 구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받기 위
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구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1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구청장은 구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17조(탄소중립 도시의 추진) 구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
<u>제15조 ~ 제19조 (생 략)</u>	<u>제18조 ~ 제22조 (현행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u>
<u><신 설></u>	<u>제23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u>

<u>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u> <u><신 설></u> <u>제20조 ~ 제22조</u> (생 략)	<u>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 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u> <u>② 구청장은 온실가스 통계 산 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 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야 한다.</u> <u><삭 제></u> <u>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u> <u>제24조 ~ 제26조</u> (현행 제20조부 터 제22조까지와 같음)
---	--